

『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』 수정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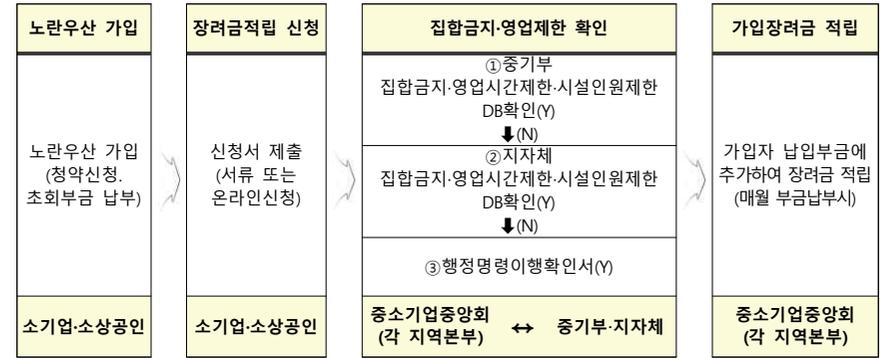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인원제한(21.10.1일 이후) 소기업·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『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지원』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7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·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(노란우산) 신규가입 지원
- (지원대상) '20. 8. 16일 이후 방역조치'를 받은 사업자 중 '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(노란우산) 신규가입자'(21.7월~예산 소진시)
 - 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제한, ③시설인원제한(21.10.1일 이후) 조치 (단, 방역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)
- (지원내용) 집합금지·영업제한·시설인원제한(21.10.1일 이후)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* 장려금 적립 (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**)
 - * 국비 2만원(50%) + 지방비 2만원(50%) 매칭 지원
 - **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충청남도는 국비 1만원(50%) + 지방비 1만원(50%) 매칭 지원
 - *** 서울특별시, 강원도 삼척시는 예산 소진에 따라 기존 신청분만 지원
- 가입일부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(매월 부금납부시), 분기납입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
- * 21년 7월~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
- '22년 8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본인 부금 납부 전 장려금 적립 가능(22.12월 기준)

- 환수 :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
 -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
- (지원절차)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,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인원제한(21.10.1일 이후)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(장려금 적립)



- (수행기관) 각 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·각 지역본부

2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 ~ 2022년 12월 16일
 - * 단,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
- 신청방법 :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)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
- 문의 : (중소벤처기업부) 044-204-7857
(광역지방자치단체) 붙임 참조
(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) 1666-9988

참고 1

방역조치 받은 사업자의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) 가입안내

□ 제도개요

- (운영목적) 소기업·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서 폐업·노령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
- (운영근거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15조
- (운영기관) 중소기업중앙회

□ 주요내용

- (가입대상)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인원제한(21.10.1일 이후)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소기업·소상공인 대표자
 - * 제외업종 : 주점업(일반유희주점, 무도유희주점, 단란주점), 무도장, 도박장, 비의료 안마업
- (납입부금) 월 5~100만원(1만원 단위), 월납 또는 분기납
- (납부기간)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(별도 만기 없음)
- (공제사유) 폐업, 사망, 노령(60세 이상), 퇴임(법인 대표자, 부상·질병)
 - * 노령공제 : 만 60세 이상으로,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
- (지급금액)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
 - * 기준이율(22.3분기) : 2.7%. 단, 폐업·사망시 3.0%(기준이율+0.3%p)
- (기타혜택) 공제부금 소득공제(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), 공제금 수급권 보호(압류·양도·담보 금지) *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
- (지원내용) 가입일부터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지원
 - * 충남, 광주, 울산은 월 2만원 지원
 - * 매월 공제금 납입시 납입부금에 더하여 적립(6개월×4만원=24만원), '22년 8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본인부금 납부 전 장려금 지원 가능

□ 가입신청

- 청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, 1회차 부금 납입
 - 구비서류 : ①청약서, ②사업주 신분증, ③사업자 등록증, ④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, 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인증명서 등)

※ 노란우산 가입채널

- 중소기업중앙회(각 지역본부)
- 금융기관(은행) : 기업,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KEB하나, 우체국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수협, 새마을금고
- 공제상담사, 협동조합, 콜센터, 인터넷 등

참고 2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.10.17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	
2. 음료 제조업	C11	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	
5. 코르크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	
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	
15. 가구 제조업	C32	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	
17. 수도업	E36		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		
19. 광업	B			
20. 담배 제조업	C12	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	
29. 건설업	F	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	
33. 정보통신업	J		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		
35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1. 교육 서비스업	P	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	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